

서울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** (명칭) 서울신학대학교 학칙 제11장 제52조에 근거하여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(이하 “본 원”)이라 칭한다.
- 제2조** (목적) 본 원은 기독교 정신과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) 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신앙생활과 여가활동 및 평생교육의 생활태도를 통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** (기능) 본 원은 본 대학교의 성인교육, 비정규교육, 평생교육, 학교 외 교육, 연수교육, 세미나 및 실습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제4조** (소재지) 본 원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101번지 본 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- 제5조** (원장) ① 본 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.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- 제6조** (교직원) ① 본 원의 각 전공과정(반)에 필요한 경우 본 원 소속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.
② 본 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계획 및 전개에 관한 업무와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7조** (운영위원회 구성) ①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둔다.
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겸한다.
- 제8조** (위원 임기)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한편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** 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 2.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3. 사업계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4.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5. 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제10조** (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)

-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 4 장 설치과정

제11조 (학습기간) 본 원의 학습기간은 15주를 원칙으로 하되, 설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학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지원자격) 본 원의 학습대상은 일반성인으로 하며, 특별한 자격상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설치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력,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 (선발방법) 본 원의 학습자는 원서 접수 및 등록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설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제14조 (설치과정 및 교과과정 등) ① 본 원은 평생교육과정, 특별교육과정으로 편제하며 특별 교육과정은 정부 또는 사회의 각종연수, 위탁교육, 지정교육을 담당한다.

② 본 원에서 필요시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원격교육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교과과정(교과목 또는 강좌)은 학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3조의 학습비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 (학습비) ① 본 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환불액은 다음의 각호의 1로 한다.

1. 개강후 1주일 이내 반환 요청자 - 전액반환
2. 개강후 1개월 이내 반환 요청자 - 3/4반환(1/4제외)
3. 개강후 2개월 이내 반환 요청자 - 2/4반환(2/4제외)
4. 개강후 2개월 이후 반환 요청자 - 반환액 없음.

제16조 (이수학점 및 인정) ① 평생교육과정의 학점 수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고 학습 성적에 의거하여 이수학점을 인정한다.

② 학점은행제의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,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.

제17조 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본원의 수료자는 설치과정에 대한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8조 (학위수여조건) ①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
2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, 전공 60학점(전공필수 27학점 포함) 이상,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.
3.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.

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

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 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9조 (학위수여) ① 제61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.

-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,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, 표준교육과정과 제38조에 의한 학위종류가 다를 경우,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심의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5 장 학습자 활동

제20조 (자치회) ① 학습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-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필요한 임원을 두며 필요 시 본 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 (금지활동) 학습자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집단적 단체 행위가 교육적 설치목적에 위배되어 학교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.

제 6 장 회 계

제22조 (회계년도) 본 원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3조 (예산편성) 원장은 매년 본 대학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 (수입원) 본 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비
2. 본 대학교 보조금
3. 위탁훈련지원금(위탁훈련 시)
4. 기타수입

제25조 (회계집행)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원에서 관장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26조 (준용규정) 학기,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제27조 (세칙의 제정) 이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8조 (운영규정의 개폐) 이 운영규정의 개정 및 폐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 (1)

이 원칙은 199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이 변경원칙은 199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3)

이 변경원칙은 199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4)

이 변경원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5)

이 변경원칙은 200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6)

이 변경운영규정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7)

이 변경운영규정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

제0000-0호

학 위 증

성 명 : 0 0 0

주민등록번호 :

전 공 : 신 학

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2조의 규정에
의하여 문학사(신학전공) 학위를 수여함.

0000년 0월 0일

서울신학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

학위번호:서울신학대학교-학점-0000(연도)-0000(일련번호)